

1. 개정이유

「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」 제16조제3항과 「해양경찰수사규칙」 제19조제1항이 ‘입건전조사’를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종전 사용하던 ‘내사’ 용어를 ‘입건전조사’로 통일하고, 수사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 사유가 혐의없음, 죄가안됨, 공소권없음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과 달리, 입건전조사 사건의 경우 이를 모두 ‘내사종결’로 표현하고 있어 종결의 투명성이 문제될 수 있는바, 불입건 결정 시에도 불송치 결정에 준하여 종결 명칭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‘내사’를 ‘입건전조사’로 통일(안 제19조, 제20조)

나. 불입건 결정의 종결 명칭 구체화(안 제19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

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내사”를 “입건전조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내사한”을 “입건전조사한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내사종결”을 “입건전조사 종결(혐의없음,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)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내사중지”를 “입건전조사 중지”로, “내사를”을 “입건전조사를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내사”를 “입건전조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공람종결”을 “공람 후 종결”로 한다.

제20조제1항 본문 중 “내사종결한”을 “입건전조사 종결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내사보고서”를 “입건전조사 보고서”로 한다.

별지 제13호서식 제1호 중 “내사종결”을 “입건전조사 종결”로, “내사중지”를 “입건전조사 중지”로 하고, 같은 서식 제4호 중 “공람종결”을 “공람 후 종결”로 한다.

별지 제14호서식 중 “피내사자”를 “피조사자”로 한다.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입건 전 조사)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(이하 “ <u>내사</u> ”라고 한다)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해양경찰관서의 수사 부서의 장(이하 “소속수사부서장”이라 한다)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.	제19조(입건 전 조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“입건전조사”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사법경찰관은 <u>내사한</u> 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.	② ----- <u>입건전조사한</u>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내사종결</u> : 제1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	2. <u>입건전조사 종결(혐의없음,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)</u> : - -----
3. <u>내사중지</u> :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<u>내사</u> 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	3. <u>입건전조사 중지</u> : ----- ----- <u>입건전조사를</u> -----
4. 이송: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해양경찰관서 또는	4. ----- ----- -----

----- 입견전조

사-----

5. 공람 후 종결-----

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불입건 결정 통지) ①

----- 입건전조사 종

결한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지로 인해 보복범죄 또는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불입건 결정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. 이 경우 그 사실을 <u>내사보고서</u>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. 1. 2. (생략)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<u>입건전조사</u> <u>보고서</u>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
---	---